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일본에서 국민연금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간 경합 시 채권자대위법제 운용 현황

이수천 | 건국대학교 겸임교수, 법학박사

I. 들어가며

특정 행위로 사회보장급여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모두 취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양자의 관계 조정이 문제 된다. 물론 사회보장급여의 성격이 수급권자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순수 사회보장적인 것이라면, 손해배상청구권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수급권자가 사회보장급여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모두 취득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¹⁾ 그러나 사회보장급여의 성격이 수급권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려는 것이라면, 양자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사회보장급여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이를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서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자의 대위(동법 제399조) 등을 생각할 수도 있다. 즉 특정 행위로 손해를 입힌 자 A가 그 상대방 B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A가 B의 사회보장급여청구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조작해 사회보장급여청구권과의 관계를 조정하는 것으로, A의 책임을 부당하게 감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적절한 수단은 아니다.²⁾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개별법에 규정해 둬으로써 사회보장급여청구권을 조작해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를 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법률로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한 측이 급여액의 범위 내에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게 하는 것이다. 예컨대 국민연금법을 보면, 공단이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

1 오종근, "사회보장급여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조정", 노동법연구 제12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2002), 100쪽.

2 오종근, 위의 논문, 100쪽.

족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14조 제1항). 또한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이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동조 제2항). 이러면 A의 책임이 부당하게 감면되는 결과도, B가 권리를 중복 취득해 지나친 이익을 취하는 것도 막을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자의 대위에 비해 공평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다만 개별법에 사회보장급여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 조정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경우에도, 규정의 불명확성이나 민법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로 인해 양자의 조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일본의 관련 법제 운영 현황 및 사례를 조사·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향후 논의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때 조사·분석은 검토의 편의 및 참고 가치 등을 고려하여 일본 국민연금법의 내용을 기본 소재로 한다.

II. 국민연금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조정 등

1. 일본 국민연금법의 규정

(1) 대위 취득

일본 국민연금법 제22조 제1항에서는 “정부는 장애나 사망 또는 그 직접 원인이 된 사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생긴 경우에, 급부를 한 때는 그 급부 가액을 한도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급부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해 발생할 것,³⁾ 제3자의 행위와 관련한 급부를 할 것,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대위 취득이 성립하는 것이다.⁴⁾ 이 때 대위 취득의 범위는 급부 가액을 한도로 한다.

3 국민연금법에 규정된 것도 있지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규정한 민법 제709조가 그 바탕에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4 国民健康保険団体連合会, 第三者行為(交通事故) 損害賠償求償事務の手引き(平成29年3月), 4頁.

다만, 연금급부와 손해배상 조정에 있어 정부가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여 구상을 하는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실제로는 일단 연금을 지급하고, 수급권자가 손해배상을 받은 후 아래의 급부 면책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급부 면책

일본 국민연금법 제22조 제2항에서는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때는 그 가액을 한도로 급부를 할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⁵⁾

이는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보험자의 급부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피해자인 피보험자·피보험자였던 자(이하 ‘피보험자 등’) 또는 피보험자 등의 유족이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그 손해배상 가액을 한도로 급부를 하지 않음으로써 2중 보장을 회피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받은 손해배상액 범위 내에서 국민연금법에 근거한 급부를 일정기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

2. 연금급부와 손해배상액 조정

손해배상액과의 조정 대상이 되는 급부는 제3자 행위의 피해자가 수급하게 되는 장애연금이나 장애수당 등, 제3자 행위의 피해자 유족이 수급하게 되는 유족연금 등이다.⁶⁾ 제3자의 행위로 이러한 급부의 수급권이 생긴 경우에는 급부를 하지 않는 기간 등을 산출하고, 해당 기간 동안 국민연금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급부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3자로부터 받은 손해배상액 중 생활보상비 상당액을 한도로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의 급부를 하지 않는 기간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런데 그 결과 해당 기간이 36개월 이상이 된 때는 36개월로 한다.

5 사무 처리에 대해서는 ‘후생연금보험법 및 국민연금법에 근거한 급부와 손해배상액의 조정 취급에 관한 사무 처리 요령’(厚生年金保険法及び国民年金法に基づく給付と損害賠償額との調整の取扱いに関する事務処理要領) 참고.

6 사망일시금은 소득보장 성격의 급부가 아니므로 손해배상액과의 조정 대상이 아니다.

우선 장애연금의 경우에는 「생활보상비 상당액⁷⁾ × 수급권자 및 가급금의 대상이 되는 자의 총수 / 수급권자 및 그 피부양 이익을 받았어야 하는 자의 수 ÷ 기준생활비」의 산출식에 따라 해당 기간을 산출한다. 다음으로 유족연금은 ① 1 기관에서만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 「(생활보상비 상당액 × 상속 비율) × 수급권자 수 / 사망한 자의 피부양 이익을 받았어야 하는 자의 수 ÷ 기준생활비」, ② 2 이상의 기관에서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 「(생활보상비 상당액 × 상속 비율 × 연금액 안분비율) × 수급권자 수 / 사망한 자의 피부양 이익을 받았어야 하는 자의 수 ÷ (기준생활비 × 연금액 안분비율)」의 산출식에 따라 해당 기간을 산출한다. 또한 유족후생연금과 유족기초연금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급부를 하지 않는 기간을 산출하고, 그 결과 급부를 하지 않는 기간이 유족후생연금과 유족기초연금이 있어 다른 경우 짧은 기간을 급부를 하지 않는 기간으로 한다.

3. 급부를 하지 않는 경우 사무 처리 방법

국민연금법에 근거한 급부와 손해배상액 조정을 하는 경우는 위 2.에서 설명한 산출 방법에 따라 산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의 수급권 발생 시부터 하는 것으로 한다.

한편, 제3자의 행위가 발생한 후 수급권자가 손해배상을 받기까지 상당 기간을 요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수급자의 생활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연금급부는 수급권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때까지 미룰 수 없고, 신속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연금급부 개시 후에 수급권자가 손해배상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연금 급부 개시 후 수급권자가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연금 지급일을 포함해 지급 정지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사전에 지급한 연금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 때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손해배상을 받은 다음 날이 된다.⁸⁾

7 생활보상비 상당액은 제3자에게 받은 손해배상 중, 수급권자와 제3자 간의 정함 등에 따라 생활보상부분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서 장제료, 의료비, 긴급경비 및 잡손실(제3자에게 손해배상으로 받은 금액 이외로 실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그리고 생활보상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금 총액 - (위자료 및 장제료, 의료비, 긴급경비 및 잡손실의 합계액)) 및 「(손해배상금 총액 - (장제료, 의료비, 긴급경비 및 잡손실의 합계)) × 2/3」의 산식으로 구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생활보상비 상당액으로 한다.

8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2018년 11월 통달 '후생연금보험법 및 국민연금법에 근거한 급부와 손해배상액의 조정 취급에 대해'(厚生年金保險法及び国民年金法に基づく給付と損害賠償額との調整の取扱いについて) 개정 전까지는 손해배상을 받은 것을 안 날(손해배상 수령일을 알 수 있는 서류 등을 받은 날 등)의 다음 날이었다.

4. 손해배상청구권 구상

수급권자로부터 제출된 손해배상에 관한 자료를 토대로 피해자가 받아야 할 연금급부 등의 금액을 빼고 손해배상액이 산출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연금급부 등과 손해배상액의 조정을 하지 않고, 가해자를 상대로 해당 연금급여 등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구상한다.

구상액은 손해배상금액이나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합의서, 화해조서, 판결문 및 영수증 등의 첨부 서류 내용을 바탕으로 확정한다.

III. 손익상계 관련 쟁점 검토

1. 손익상계 인정 여부

제3자의 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는 이익도 얻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손해배상청구권자인 피해자나 피해자 유족이 제3자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장애나 사망을 원인으로 이익을 얻는 경우, 그 이익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손익상계적 조정을 해야 하는지가 문제 된다. 그런데 일본법에서는 사회보장급여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병존을 인정하고, 양 청구권의 상호 조정 제도를 채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학설상 이견은 있지만, 실무상 손익상계적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⁹⁾

손익상계적 조정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이익을 고려해 그 이익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상호 대립하는 채무를 대등하게 소멸시키는 본래의 상계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익과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손해 간에 동질성이 있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¹⁰⁾ 한편 손익상계적 조정은 제3자의

9 若林三奈, “社会保障給付と損害賠償との調整：被害者に過失ある場合の併行給付の控除範囲”, 「命館大法学」2005年 2・3号, 立命館大学法学会(2005), 753頁.

10 黒江卓郎·榊研司·鈴木亮·松原雄輝, “交通事故における社会保障制度をめぐる諸問題”, 「専門実務研究」12号, 横浜弁護士会(2018), 87頁.

행위에 따른 손해의 원상회복과 더불어 부당한 이익 방지 사상에 기초한 것이고, 따라서 그 기준은 손해배상의 목적이거나 당사자 간의 공평의 견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공제 대상 및 공제 제한

기본적으로 유족연금과 조정 대상이 되는 손해 항목은 사망에 의한 일실이익으로 한정된다. 조정 대상이 일실이익으로 한정되는 것은 “사회보장급여와 손해배상 간 조정 대상은 같은 성질로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에 한 한다.”는 원칙 때문이다.¹¹⁾ 즉, 사회보장급여는 재산적 손해 중 소극적 손해(일실이익)만을 보상하는 것이므로, 정신적 손해라든지 재산적 손해 중 적극적 손해는 조정 대상이 될 수 없다. 참고로 공제되는 일실이익의 범위는 얻을 수 있는 연금액뿐만 아니라, 급여 수입 등을 포함한 일실이익 전반이다.¹²⁾ 한편 장애연금과 조정 대상이 되는 손해 항목은 후유장애 일실이익 및 휴업손해이다.¹³⁾ 다만, 조정 대상이 되는 손해 항목을 후유장애 일실이익으로 한정하고, 휴업손해 등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도 있다.¹⁴⁾

한편, 장래에 걸쳐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의 지급이 계속되는 것이 기대되는 경우, 장래 급부 부분도 공제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해 일본 최고재판소는 “정부가 보험급부 또는 재해보상을 함으로써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정부에 이전되고 수급권자가 이를 상실하는 것은, 정부가 실제 보험금을 급부하고 손해를 전보한 때에 한한다. 실제로 보험급부를 하지 않은 이상, 장래에 걸쳐 계속 지급되는 것이 확정되어 있더라도 수급권자는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함에 있어 이러한 장래의 급부액을 손해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하였다.¹⁵⁾ 즉, 실제 지급액만이 손익상계의 대상이 되고, 장래 급부액은 손익상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한 것이다.¹⁶⁾ 그러나 그 후 최고재판소는 유족들이 장래 수급할 연금액 중 구체적인 지급액 및 지급 절차가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연금을 급부한 경우와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의

11 最2小判昭和62年7月10日民集41卷5号, 1202頁.

12 손익상계에 관한 한일 비교 연구로 高影斌, “人身損害賠償請求權の日韓比較法研究(2·完): 生命侵害の場合を中心に”, 『北大法学論集』 64(1), 北海道大学大学院法学研究科(2013).

13 森富義明·村主隆行, 「裁判実務シリーズ9 交通関係訴訟の実務」, 商事法務(2016), 361頁.

14 神戸地判平成20年8月26日交民41券4号, 1044頁.

15 渡辺健寿, “保険給付と損益相殺との関係”, 『福島の進路』 2015.4, とうほう地域総合研究所(2015), 54頁.

16 渡辺健寿, 前掲注(15), 54頁.

채권 존속 확실성을 이유로 손익상계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였다.¹⁷⁾ 다만, 이 판례도 장래 급부를 원칙 손익상계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지급이 확정된 연금액을 한도로 손익상계를 인정한 것이다.

3. 연금 수급권자와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상속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의 공제

제3자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자와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상속인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손익상계적 조정이 문제가 된다.

판례에 따르면, 원고가 복수인 경우 피공제대상은 그 연금 수급권자에 한한다.¹⁸⁾ 따라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 공제는 유족연금 수급권을 가진 상속인이 상속한 손해배상부분에 한해 공제의 대상이 된다. 이를 상속인별 공제 또는 상속 후 공제라고 한다. 한편, 수급권자가 아닌 피해자의 유족이 사실상 수급권자로부터 급부 이익을 향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법률상 보장된 이익이 아니므로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이 취득하는 손해배상액에서 연금급부를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¹⁹⁾

4. 과실상계와 손익상계(공제)의 선후 관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의 선후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가 문제 된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① 우선 과실상계를 하여 ‘가해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손해액’을 산출한 후 공제를 해야 한다는 견해(공제 전 상계설 또는 상계 후 공제설),²⁰⁾ ② 우선 공제를 한 후에 과실상계를 해야 한다는 견해(상계전 공제설 또는 공제후상계설)가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대립은 학설뿐만 아니라 판례에서도 보이고 있다.

17 最大判平成5年3月24日民集47卷4号, 3039頁.

18 最2小判昭和50年10月24日民集29卷9号, 1379頁.

19 黒江卓郎·榊研司·鈴木亮·松原雄輝, 前掲注(10), 87頁.

20 最3小判平成元年4月11日民集43卷4号, 209頁.

이러한 대립은 공제 대상이 되는 손해 항목의 손해액과 연금의 기지급액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큰 경우에는 상계 전 공제인지, 상계 후 공제인지에 따라 지급되는 손해액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손해 총액이 1,000만 원, 피해자의 과실이 20%, 연금급부로 700만 원을 얻은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경우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은 ① 공제 전 상계설에 따르면 $100(1,000만 원 \times 0.8 - 700만 원)$ 인 반면, ② 공제 후 상계설에 따르면 $240((1,000만 원 - 700만 원) \times 0.8)$ 이 된다. 보면 알겠지만 ② 공제 후 상계설에 따르는 편이 피해자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피해자는 과실에도 불구하고 병행급부가 없는 경우 산출되는 배상액을 초과하여 손해배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연금급부 공제 문제는 단순히 과실상계의 순서 내지 선후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정부의 구상권 내지 대위 범위의 문제와 관계가 있고, 정부의 구상권 확보와 피해자의 손해 전보 중 무엇을 우선할 것인가라는 문제인 것이다.²¹⁾

IV. 사례 검토 : 일실이익성에 관한 논점

1. 판례의 기본 입장

공적연금 수급권자가 교통사고 등 제3자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나 상속인이 제3자에 대해 사망한 수급권자가 얻을 수 있는 연금급부의 상실을 일실이익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있다. 기본적으로 일본 최고재판소는 퇴직연금과 장애연금(기본연금분)에 대해서는 유족연금과의 급부 동질성을 이유로 일실이익성을 긍정하고 있다. 다만, 장애연금(추가분)과 유족연금에 대해서는 거출과 급부 사이의 관련성이 부족하고 재혼 등 본인의 의사에 따라 급부가 종료될 수 있음을 이유로 일실이익성을 부정하고 있다.²²⁾

21 若林三奈, 前掲注(9), 755頁.

22 有森美木, “公的年金の逸失利益性に関する論点整理”, 「年金レビュー」2007年3月号, 日興フィナンシャル・インテリジェンス(2007), 4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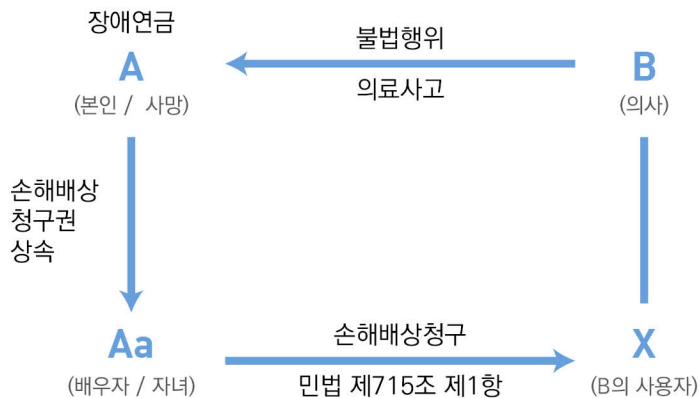
일본 최고재판소는 연금제도의 목적이나 급부 성질 등에 착목하여 일실효익성의 유무 등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최고재판소의 논리를 검토하는 것은 공적연금제도에 관한 사고방식을 파악하는데도 의미가 있다. 이에 아래에서는 퇴직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의 일실효익성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고, 일본 최고재판소의 견해를 검토하고자 한다.

2. 최고재판소 2소법정 1999년 10월 22일 판결

이 판결은 1986년 4월에 도입된 新연금제도와 관련해 처음으로 공간된 최고재판소 판결로서 의의가 있기에,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²³⁾

(1) 사안의 개요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기초연금 및 후생연금보험법에 따른 장애후생연금(이하 '장애연금')의 수급권자인 A가 X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B의 과실로 사망하였다. 이에 A의 상속인 Aa는 X병원에 대해 민법 제715조 제1항(사용자 등의 책임)에 의거해 A의 장애연금 상당액 등의 배상을 청구하였다.



23 이하는 最高裁二小法廷平成11年10月22日判決判時1692号, 50頁; 有森美木, 前掲注(22).

(2)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단

장애연금의 기본연금분에 대해서는 일실회익을 긍정한 한편, 추가분에 대해서는 거출과 급부의 관계성이 없다는 것이나 본인의 의사에 따른 사유로 급부가 종료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일실회익성을 부정하였다. 유족연금 공제 범위는 이미 지급한 금액을 한도로 하였다.

1) 원심 판단

원심에서는 우선 ① 불법행위로 사망한 자는 배우자나 자녀 추가분도 포함한 장애연금을 일실회익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고, 그 상속인은 가해자에 대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 근거로는 국민연금법에 의해 지급되는 장애연금의 경우, 해당 수급권자에 대해 손실보상 내지 생활보장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 그 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하고 있는 가족에 대한 관계에서도 같은 기능을 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덧붙여 ② A의 장애연금 존속 확실성에 대해서는 A가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상태지만 평균적 남성보다 특히 단명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평균여명기간 동안 장애연금을 수급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③ 배우자나 자녀 추가분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았다. “장애기초연금 중 자녀 추가분은 해당 자녀가 18세가 된 날 이후의 3월 31일이 끝날 때까지, 장애후생연금 수급액 중 배우자의 추가분은 배우자가 65세가 된 날까지 각각 가산하여 지급되므로 이것도 사망한 A가 얻을 수 있는 장애연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2) 원심 판단에 대한 찬부

일본 최고재판소는 원심 판단 중 ①·②는 인용하였으나, ③은 인용하지 않았다.

① 장애연금 기본연금분은 원칙적으로 거출에 근거한 급부이므로 일실회익으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²⁴⁾ 그리고 ② 장애연금의 수급기간에 대해서는 원심처럼 평균여명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4 일본 최고재판소는 “장애연금은 원칙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피보험자가 소정의 장애 등급에 해당하는 장애 상태가 된 때에 지급되는 것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경우에도 보험료가 거출된 것에 근거한 급부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장애연금을 수급하던 자가 불법행위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가해자에 대해 장애연금의 수급권자가 생존했다면 수급할 수 있었던 장애연금의 현재액을 손해로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③ 장애연금의 추가분에 대해서는 원심과 달리 일실이익성을 부정하였다. 그 근거에는 장애연금 추가분은 거출된 보험료와 관계가 없고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급부라는 것, 자녀의 결혼·배우자의 이혼처럼 본인의 의사로 결정할 수 있는 사유로 인해 가산 종료가 예정되는 등 기본연금분과 같은 수준의 존속 확실성이 없다는 것이 있었다.

3) 유족연금의 공제

일본 최고재판소는 우선 유족연금의 공제 범위에 대해 기존의 판례 법리를 찬성하면서 “상속인 중에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사망을 원인으로 유족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있는 때는 지급을 받는 것이 확정된 유족연금액을 한도로” 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손익상계적인 조정을 도모할 수 있는 손해는 재산적 손해 중 일실이익에 한하고, 지급을 받는 것이 확정된 유족연금액이 이를 상회하는 경우에도 해당 초과분을 다른 재산적 손해나 정신적 손해와의 관계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V. 마치며

사회보장급여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 경합 시 대위 행사나 그 조정은 중요한 문제이다. 이는 피해자가 사회보장급여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경합으로 가해행위가 없었던 경우보다 유리한 지위에 서는 불합리를 제한하는 한편, 사회보장급여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이 문제에 있어 사회보장급여청구권을 조작함으로써 공평한 결과를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예컨대, 양국에서는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고 정부가 그 행위와 관련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하면, 그 급여액을 한도로 제3자에 대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여 대위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 일본 국민연금법 제22조 제1항). 한편 해당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때는 그 배상액을 한도로 정부의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을 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국민연금법 제114조 제2항, 일본 국민연금법 제22조 제2항).

다만, 일본에서는 사회보장급여와 손해배상 조정에 있어 정부가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여 구상하기 보다는 일단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수급권자가 손해배상을 받은 후 장애연금 등 지급 면책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 일본에서는 사회보장급여와 손해배상 조정에 관한 사무처리 요령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꾀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회보장급여와 손해배상 조정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가해자의 부당한 면책 회피라는 측면에서 공제 범위를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 등 다양한 쟁점이 있다. 이와 관련해 본고에서는 손해배상액 산정 시 손익상계 등을 살펴보고, 특히 과실상계와 손익상계(공제)의 선후 관계나 일실이익성에 관해 구체적 검토를 하였다.

각종 사회보상제도와 불법행위법 제도가 병존하는 한 사회보상급여와 손해배상의 조정은 문제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중이익 회피 등을 통해 피해자의 손해를 적절히 전보해 나가는 한편, 불법행위자의 부당한 면책이나 과잉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대위 행사를 비롯해 사회보상급여와 손해배상의 조정 방식을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오종근, “사회보장급여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조정”, 노동법연구 제12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02).
- 若林三奈, “社会保障給付と損害賠償との調整：被害者に過失ある場合の併行給付の控除範囲”, 「命館大法学」2005年 2・3号, 立命館大学法学会(2005).
- 有森美木, “公的年金の逸失利益性に関する論点整理”, 「年金レビュー」2007年 3月号, 日興フィナンシャル・インテリジェンス(2007).
- 高影娥, “人身損害賠償請求権の日韓比較法研究(2·完)：生命侵害の場合を中心に”, 「北大法学論集」64(1), 北海道大学大学院法学研究科(2013).
- 渡辺健寿, “保険給付と損益相殺との関係”, 「福島の進路」2015.4, とうほう地域総合研究所(2015).
- 森富義明·村主隆行, 「裁判実務シリーズ9 交通関係訴訟の実務」, 商事法務(2016).
- 黒江卓郎·榊研司·鈴木亮·松原雄輝, “交通事故における社会保障制度をめぐる諸問題”, 「専門実務研究」12号, 横浜弁護士会(2018).
- 国民健康保険団体連合会, 第三者行為(交通事故) 損害賠償求償事務の手引き(平成29年3月).